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6-1판 개정전후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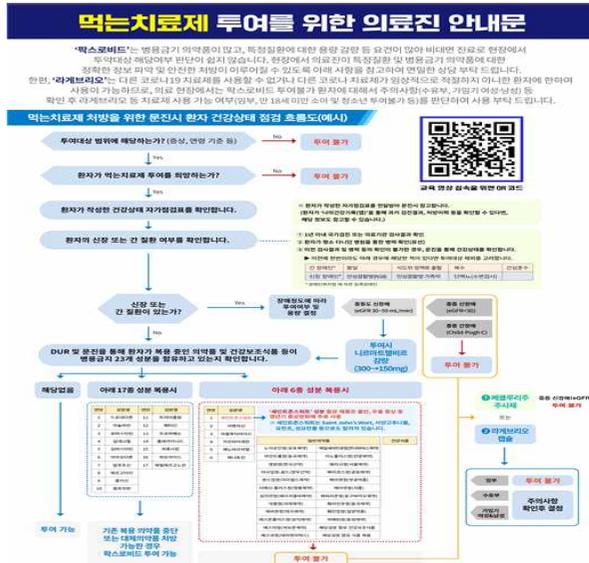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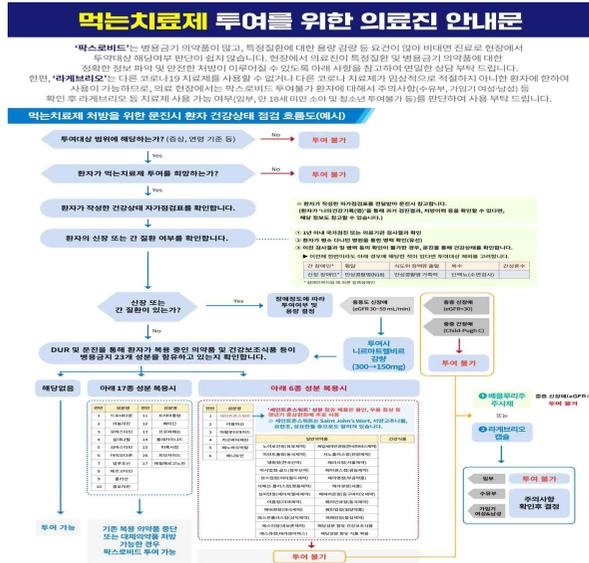
<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 환자관리팀>

쪽	현행(6판)	6-1판 개정(안)	개정사유																		
[Part 1. 코로나19 치료제별 안내] I. 항바이러스제-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2	<p>② (투여대상 2):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증중등증 환자 (신 설)</p>	<p>② (투여대상 2):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증중등증 환자</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 22. 3. 14.부터 한시적 허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으로 확진*된 '투여대상 2' 의 경우는 만 60세 이상의 환자에 한해 증상발생/산소치료 기준 부합시 베클루리주 처방 가능</p> <p>*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p> </div> <p style="text-align: center;">< 진단 방법에 따른 투약 대상자 기준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기준</th> <th>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th> <th>PCR</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투여대상 1</td> <td style="text-align: center;">중증 또는 폐렴</td> <td> ① CXR 또는 CT 상폐렴 소견 ② Room air SpO2 ≤ 94% ③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투여대상 2</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경증·중등증 (▲증상발생 7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td> <td>1. 연령 만 60세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2. 기저질환 (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PCR	투여대상 1	중증 또는 폐렴	① CXR 또는 CT 상폐렴 소견 ② Room air SpO2 ≤ 94% ③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	○	투여대상 2	경증·중등증 (▲증상발생 7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1. 연령 만 60세 이상	○	○	2. 기저질환 (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	○	○	<p>- (추가) 경증·중등증 투여 대상자 (투여대상 2) 관련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RAT) 양성자 처방 가능 내용</p>
구분		기준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PCR																	
투여대상 1	중증 또는 폐렴	① CXR 또는 CT 상폐렴 소견 ② Room air SpO2 ≤ 94% ③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	○																	
투여대상 2	경증·중등증 (▲증상발생 7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1. 연령 만 60세 이상	○	○																	
		2. 기저질환 (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	○	○																	

쪽	현행(6판)	6-1판 개정(안)	개정사유																																												
2	<p>③ (선정 주체) 상기 기준에 따라 주치의가 판단하여 결정 < 투약 대상자별 용법·용량 ></p> <table border="1" data-bbox="237 335 927 703"> <thead> <tr> <th>구분</th> <th>증상별</th> <th>연령</th> <th>1인 투약 기준량</th> <th>투여일</th> <th>최대 투여일</th> </tr> </thead> <tbody> <tr> <td>투여대상 1 (기준)</td> <td>중증 또는 폐렴</td> <td>성인 및 소아 (3.5kg 이상)</td> <td>6비이알</td> <td>5일분</td> <td>10일간</td> </tr> <tr> <td rowspan="2">투여대상 2 (기준)</td> <td rowspan="2">경증·중등증 (증상발생 7일 이내)</td> <td>12세 이상 (40kg이상 + 기저질환자)</td> <td>4비이알</td> <td>3일분</td> <td>-</td> </tr> <tr> <td>만 60세 이상</td> <td>4비이알</td> <td>3일분</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증상별	연령	1인 투약 기준량	투여일	최대 투여일	투여대상 1 (기준)	중증 또는 폐렴	성인 및 소아 (3.5kg 이상)	6비이알	5일분	10일간	투여대상 2 (기준)	경증·중등증 (증상발생 7일 이내)	12세 이상 (40kg이상 + 기저질환자)	4비이알	3일분	-	만 60세 이상	4비이알	3일분	-	<p>③ (선정 주체) 상기 기준에 따라 주치의가 판단하여 결정 < 투약 대상자별 용법·용량 ></p> <table border="1" data-bbox="987 335 1677 703"> <thead> <tr> <th>구분</th> <th>증상별</th> <th>연령</th> <th>1인 투약 기준량</th> <th>투여일</th> <th>최대 투여일</th> </tr> </thead> <tbody> <tr> <td>투여대상 1 (기준)</td> <td>중증 또는 폐렴</td> <td>성인 및 소아 (3.5kg 이상)</td> <td>6비이알</td> <td>5일분</td> <td>10일간</td> </tr> <tr> <td rowspan="2">투여대상 2 (기준)</td> <td rowspan="2">경증·중등증 (증상발생 7일 이내)</td> <td>12세 이상 (40kg이상 + 기저질환자)</td> <td>4비이알</td> <td>3일분</td> <td>-</td> </tr> <tr> <td>만 60세 이상</td> <td>4비이알</td> <td>3일분</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증상별	연령	1인 투약 기준량	투여일	최대 투여일	투여대상 1 (기준)	중증 또는 폐렴	성인 및 소아 (3.5kg 이상)	6비이알	5일분	10일간	투여대상 2 (기준)	경증·중등증 (증상발생 7일 이내)	12세 이상 (40kg이상 + 기저질환자)	4비이알	3일분	-	만 60세 이상	4비이알	3일분	-	<p>- 용어통일</p>
구분	증상별	연령	1인 투약 기준량	투여일	최대 투여일																																										
투여대상 1 (기준)	중증 또는 폐렴	성인 및 소아 (3.5kg 이상)	6비이알	5일분	10일간																																										
투여대상 2 (기준)	경증·중등증 (증상발생 7일 이내)	12세 이상 (40kg이상 + 기저질환자)	4비이알	3일분	-																																										
		만 60세 이상	4비이알	3일분	-																																										
구분	증상별	연령	1인 투약 기준량	투여일	최대 투여일																																										
투여대상 1 (기준)	중증 또는 폐렴	성인 및 소아 (3.5kg 이상)	6비이알	5일분	10일간																																										
투여대상 2 (기준)	경증·중등증 (증상발생 7일 이내)	12세 이상 (40kg이상 + 기저질환자)	4비이알	3일분	-																																										
		만 60세 이상	4비이알	3일분	-																																										
<p>[Part 1. 코로나19 치료제별 안내] II.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 및 리토나비르)</p>																																															
6	<p>(신설)</p>	<p>< 진단 방법에 따른 투약 대상자 기준 ></p> <table border="1" data-bbox="965 868 1682 1337"> <thead> <tr> <th>공통사항</th> <th>기준 1</th> <th>전문 가용 신속항원검사</th> <th>PCR</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td> <td>1. 연령 만 60세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2. 연령 만 40세 이상 기저질환자</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3. 연령 만 12세 이상 면역저하자</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공통사항	기준 1	전문 가용 신속항원검사	PC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1. 연령 만 60세 이상	○	○	2. 연령 만 40세 이상 기저질환자		○	3. 연령 만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	<p>- (추가) 진단 방법에 따른 투약 대상자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표</p>																														
공통사항	기준 1	전문 가용 신속항원검사	PC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1. 연령 만 60세 이상	○	○																																												
	2. 연령 만 40세 이상 기저질환자		○																																												
	3. 연령 만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																																												

쪽	현행(6판)	6-1판 개정(안)	개정사유
---	--------	------------	------

11,
25,
124,
168



- 교육 영상 QR 코드 추가

15

▶ 먹는치료제 수요요청 및 공급방식 ◀

□ (신청대상) 먹는 치료제 직접 공급 대상 기관

- 담당역무, 감염병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 생활치료센터가 해당되며, 향후 직접 공급 대상 기관 확대 시, 해당 기관도 포함

□ (수급관리) 현 제고관리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1주일간 필요용량에 대해 신청 → 결빙청은 산출근거에 기반하여 조정 · 공급조치

- 반드시 산출 근거를 명확히하여 수요량 및 비교관에 작성하여야 공급이 가능하며, 제고관리 시스템에 입고량, 사용량 미입력시 제고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공급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예) 10개(지난 2주일간 평균 일일 사용량)4일 = 70개
- 과도한 분량 요청 시, 중앙 조정에 따라 공급 분량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2주 분량만 요청하시기 바라며,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급절차) 평일(금 제외) 13시까지 수요요청 입력 → 14시까지 결빙청 (유관양행) 검토 후 결정량 입력 및 화평 → 의일(주말, 공휴일 제외) 17시까지 공급

□ (신청방법) 기존 일괄 공문으로 신청방식에서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 (<https://hcr.hva.or.kr>)의 경구용 치료제 제고관리시스템에 수요요청

□ 고려사항

- 제고관리 시스템 입고량 수요량 미입력 또는 오입력 시, 수요요청 미변영 또는 일부 반영 될 수 있으므로, 제고관리시스템 철저 관리
- 입고량, 수요량 입력 철저 및 비교관에 수요요청 근거 명시, 먹는 치료제 재배분 시, 제고관리시스템 입고량 수정
- 시도 주관으로 먹는 치료제 수급상황에 따라 주사제(해류루라)와 먹는 치료제 통합 운영, 시군구간 먹는 치료제 분량 재배분 적극 활용

□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시군구, 의료기관 등에서 "먹는 치료제 수요요청 및 공급방식"에 따라 운영되도록 안내 조치

▶ 먹는치료제 수요요청 및 공급방식 ◀

□ (신청대상) 먹는 치료제 직접 공급 대상 기관

- 담당역무, 감염병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 생활치료센터가 해당되며, 향후 직접 공급 대상 기관 확대 시, 해당 기관도 포함

□ (수급관리) 현 제고관리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1주일간 필요용량에 대해 신청 → 결빙청은 산출근거에 기반하여 조정 · 공급조치

- 반드시 산출 근거를 명확히하여 수요량 및 비교관에 작성하여야 공급이 가능하며, 제고관리 시스템에 입고량, 사용량 미입력시 제고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공급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예) 10개(지난 2주일간 평균 일일 사용량)4일 = 70개
- 과도한 분량 요청 시, 중앙 조정에 따라 공급 분량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2주 분량만 요청하시기 바라며,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급절차) 평일(금 제외) 13시까지 수요요청 입력 → 14시까지 결빙청 (유관양행) 검토 후 결정량 입력 및 화평 → 의일(주말, 공휴일 제외) 17시까지 공급

□ (신청방법) 기존 일괄 공문으로 신청방식에서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 (<https://hcr.hva.or.kr>)의 경구용 치료제 제고관리시스템에 수요요청

□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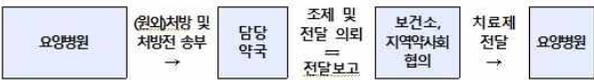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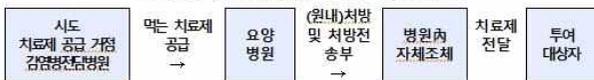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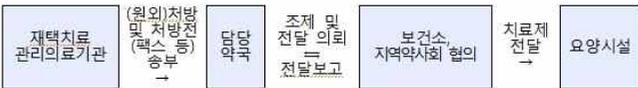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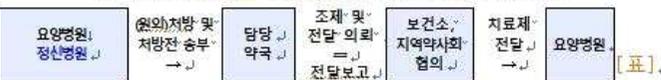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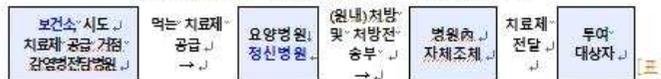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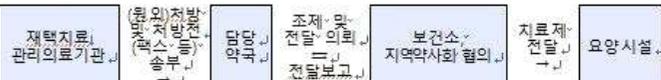
- 제고관리 시스템 입고량 수요량 미입력 또는 오입력 시, 수요요청 미변영 또는 일부 반영 될 수 있으므로, 제고관리시스템 철저 관리
- 입고량, 수요량 입력 철저 및 비교관에 수요요청 근거 명시, 먹는 치료제 재배분 시, 제고관리시스템 입고량 수정
- 시도 주관으로 먹는 치료제 수급상황에 따라 주사제(해류루라)와 먹는 치료제 통합 운영, 시군구간 먹는 치료제 분량 재배분 적극 활용

□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시군구, 의료기관 등에서 "먹는 치료제 수요요청 및 공급방식"에 따라 운영되도록 안내 조치

- 오타 수정(2주 분량 → 1주 분량)

쪽	현행(6판)	6-1판 개정(안)	개정사유																																								
16	<p>6 처방·공급 기관</p> <table border="1" data-bbox="257 274 880 576"> <thead> <tr> <th>확진자 분류</th> <th>처방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재택치료</td> <td>(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td> </tr> <tr> <td>생활치료센터</td> <td>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td> </tr> <tr> <td>재활의료기관</td> <td>재활의료기관(원외처방)</td> </tr> <tr> <td>노인요양시설</td> <td>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원외처방)</td> </tr> <tr> <td>요양병원</td> <td>요양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td> </tr> <tr> <td>감염병전담요양병원</td> <td>감염병전담요양병원(원내처방)</td> </tr> <tr> <td>감염병(거점)전담병원</td> <td>감염병(거점)전담병원(원내처방)</td> </tr> <tr> <td>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td> <td>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종합병원, 정신병원(원외처방)</td> </tr> <tr> <td>60세 이상 전문가용 RAT 양성 처방</td> <td>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 전문가용 RAT 양성시 처방 가능</td> </tr> </tbody> </table> <p>*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에서 조제·전달 * 요양병원·시설에서 대규모 처방대상자 발생으로 시군구 담당약국에서 공급이 어려운 경우 시·도 주관으로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소재 담당약국에 공급</p> <p>※ 라게브리오 처방·공급 기관과 동일</p>	확진자 분류	처방기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원외처방)	노인요양시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원외처방)	요양병원	요양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원내처방)	감염병(거점)전담병원	감염병(거점)전담병원(원내처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종합병원, 정신병원(원외처방)	60세 이상 전문가용 RAT 양성 처방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 전문가용 RAT 양성시 처방 가능	<p>6 처방·공급 기관</p> <p>< 먹는 치료제 확진자 분류 및 처방기관(4.4~) ></p> <table border="1" data-bbox="965 288 1666 614"> <thead> <tr> <th>확진자 분류</th> <th>처방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재택치료</td> <td>(집중관리군) 집중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td> </tr> <tr> <td>생활치료센터</td> <td>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td> </tr> <tr> <td>재활의료기관</td> <td>재활의료기관(원외처방)</td> </tr> <tr> <td>노인요양시설</td> <td>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원외처방)</td> </tr> <tr> <td>요양병원</td> <td>요양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td> </tr> <tr> <td>감염병전담요양병원</td> <td>감염병전담요양병원(원내처방)</td> </tr> <tr> <td>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td> <td>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원내처방))</td> </tr> <tr> <td>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병원</td> <td>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원외처방), 정신병원(원내, 원외처방)</td> </tr> <tr> <td>60세 이상 전문가용 RAT 양성 처방</td> <td>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 전문가용 RAT 양성시 처방</td> </tr> </tbody> </table> <p>*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에서 조제·전달 * 요양병원 시설에서 대규모 처방대상자 발생으로 시군구 담당약국에서 공급이 어려운 경우 치료제공급 거점병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 물량을 활용하여 원내(요양·정신병원), 원외(출향 담당약국으로 운송 후 조제·전달, 요양시설) 처방(4.6)</p> <p>※ 라게브리오 처방·공급 기관과 동일</p> <p>○ (외래진료센터) 외래진료센터 확대(총수분, 3.28)에 따라 외래진료센터 신청 의료기관 중 내과·재활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호흡기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만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p> <p>○ (재택치료 면역저하자) 호흡기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과거 병력 등 이력 파악이 쉽지 않은 재택치료 면역저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예외적으로 4월 4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p>	확진자 분류	처방기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집중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원외처방)	노인요양시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원외처방)	요양병원	요양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원내처방)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원내처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병원	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원외처방), 정신병원(원내, 원외처방)	60세 이상 전문가용 RAT 양성 처방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 전문가용 RAT 양성시 처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방 기관 추가에 따른 개정 - 외래진료센터 확대에 따른 처방가능 외래진료센터 규정 - 재택치료 중인 면역저하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예외적 처방 허용
확진자 분류	처방기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원외처방)																																										
노인요양시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원외처방)																																										
요양병원	요양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원내처방)																																										
감염병(거점)전담병원	감염병(거점)전담병원(원내처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종합병원, 정신병원(원외처방)																																										
60세 이상 전문가용 RAT 양성 처방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 전문가용 RAT 양성시 처방 가능																																										
확진자 분류	처방기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집중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원외처방)																																										
노인요양시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원외처방)																																										
요양병원	요양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원내처방)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원내처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병원	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원외처방), 정신병원(원내, 원외처방)																																										
60세 이상 전문가용 RAT 양성 처방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 전문가용 RAT 양성시 처방																																										
17	<p>7 재고관리 세부사항</p> <p>(2) (물량조정) 시도는 권역내 대량 확진자 발생, 긴급 수요 대처 등 상황에 따라 필요시, 시도 배정 물량을 재배분하여 활용 가능</p> <p>- 방대본(자원지원팀)에 물량 조정을 사전 신청하여 조정(Part 3. 서식 및 참고자료 2-3) 가능하되, 긴급한 경우 우선으로 협의 후 사후 신청 가능</p> <p>(3) (물량조정시 배송방법) 방대본 협의 하에 시도지사가 시도 내 공급대상기관(약국, 생활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 등) 간 기 배정받은 물량조정 시, 물량을 공급받는 기관이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p>	<p>7 재고관리 세부사항</p> <p>(2) (물량조정) 시도는 권역내 대량 확진자 발생, 긴급 수요 대처 등 상황에 따라 필요시, 시도 배정 물량을 재배분하여 활용 가능</p> <p>— 방대본(자원지원팀)에 물량 조정을 사전 신청하여 조정(Part 3. 서식 및 참고자료 2-3) 가능하되, 긴급한 경우 우선으로 협의 후 사후 신청 가능</p> <p>(3) (물량조정시 배송방법) 방대본 협의 하에 시도지사가 시도 내 공급대상기관(약국, 생활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 등) 간 기 배정받은 물량조정 시, 물량을 공급받는 기관이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물량 조정신청서 제출 삭제 																																								

쪽	현행(6판)	6-1판 개정(안)	개정사유
18	<p>(3) (요양병원)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에 따라 ① (원외처방) 요양병원에서 진료·처방 후 담당약국으로 처방전을 송부하고 담당약국에서 치료제 조제·전달 ② (원내처방) 요양병원에서 시군구에 공급 요청하고, 시도는 공급거점병원에 공급 통보 조치 후 요양병원에서 진료·처방·자체 조제 실시</p> <p>* 원내처방 시, 15p 물량 조정 시 배송방법을 준용하여 요양병원에서 공급거점병원의 물량을 배송하는 것이 원칙</p> <p>< 요양병원 원외 처방시, 치료제 전달 흐름도 ></p>  <p>< 요양병원 원내 처방시, 치료제 전달 흐름도 ></p>  <p>(4) (요양시설)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에 따라 제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서 진료·처방 후, 담당약국으로 처방전을 송부하고 담당약국에서 치료제 조제·전달</p> <p>< 요양시설 치료제 전달 흐름도(담당약국) ></p>  <p>- 대규모 처방대상자 발생, 담당약국 재고 현황 고려하여 필요시, 요양병원에서 시군구에 공급 요청하고, 시도는 공급거점병원에 공급 통보 조치 후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p> <p>* 19p 물량 조정 시 배송방법을 준용하여 요양시설에서 공급거점병원의 물량을 담당약국으로 배송하는 것이 원칙</p> <p>(5) (재활의료기관, 종합병원, 정신병원)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종합병원, 정신병원에서 진료·처방 후 담당약국으로 처방전을 송부하고 담당약국에서 치료제 조제·전달</p>	<p>(3) (요양병원 정신병원)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에 따라 ① (원외처방) 요양병원·정신병원에서 진료·처방 후 담당약국으로 처방전을 송부하고 담당약국에서 치료제 조제·전달 ② (원내처방)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지자체(시군구, 시도)에 공급 요청하고, 보건소 또는 공급거점병원에서 먹는 치료제 수령 후 요양병원에서 진료·처방·자체 조제 실시</p> <p>* 원내처방 시, 15p 물량 조정 시 배송방법을 준용하여 요양병원에서 공급거점병원의 물량을 배송하는 것이 원칙</p> <p>< 요양병원·정신병원 원외 처방시, 치료제 전달 흐름도 ></p>  <p>< 요양병원·정신병원 원내 처방시, 치료제 전달 흐름도 ></p>  <p>(4) (요양시설)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에 따라 제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서 진료·처방 후, 담당약국으로 처방전을 송부하고 담당약국에서 치료제 조제·전달</p> <p>< 요양시설 치료제 전달 흐름도(담당약국) ></p>  <p>- 대규모 처방대상자 발생, 담당약국 재고 현황 고려하여 필요시, 요양시설에서 지자체(시군구, 시도)에 공급 요청하고, 보건소 또는 공급거점병원 물량을 담당약국으로 배송 후 담당약국 통해 조제·전달</p> <p>* 19p 물량 조정 시 배송방법을 준용하여 요양시설에서 공급거점병원의 물량을 담당약국으로 배송하는 것이 원칙</p> <p>(5) (재활의료기관, 종합병원, 정신병원)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종합병원, 정신병원에서 진료·처방 후 담당약국으로</p>	<p>- 정신병원 원내처방 가능(4.4~)에 따른 내용 추가</p> <p>- 보건소 선공급을 통한 원내처방 추가</p>

쪽	현행(6판)	6-1판 개정(안)	개정사유
	<p align="center">< 종합병원, 정신병원 치료제 전달 흐름도 ></p>	<p align="center">로 처방전을 송부하고 담당약국에서 치료제 조제·전달</p> <p align="center">< 재활의료기관, 종합병원, 정신병원 치료제 전달 흐름도 ></p>	

[Part 1. 코로나19 치료제별 안내] III. 먹는치료제-라게브리오(몰누피라비르)

22	<p>(1) (투여대상):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1과 기준2를 충족하는 환자 (신설)</p>	<p>(1) (투여대상):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1과 기준2를 충족하는 환자</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22. 3. 14.부터 한시적 허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는 만 60세 이상의 환자에 한해 기준2 부합시 라게브리오 처방 가능</p> <p>*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p> </div> <p align="center">< 진단 방법에 따른 투약 대상자 기준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공통사항</th> <th style="width: 30%;">기준 1</th> <th style="width: 15%;">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th> <th style="width: 10%;">PCR</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무증상자 제외) •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 </td> <td>1. 연령 만 60세 이상</td> <td align="center">○</td> <td align="center">○</td> </tr> <tr> <td>2. 연령 만 40세 이상 기저질환자</td> <td></td> <td align="center">○</td> </tr> <tr> <td>3. 연령 만 18세 이상 면역저하자</td> <td></td> <td></td> <td align="center">○</td> </tr> </tbody> </table>	공통사항	기준 1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PC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무증상자 제외) •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 	1. 연령 만 60세 이상	○	○	2. 연령 만 40세 이상 기저질환자		○	3. 연령 만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만 60세 이상 환자 관련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자 처방 가능 내용 - (추가) 진단 방법·연령에 따른 투약 대상자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표
공통사항	기준 1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PC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무증상자 제외) •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 	1. 연령 만 60세 이상	○	○															
	2. 연령 만 40세 이상 기저질환자		○															
	3. 연령 만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														

쪽	현행(6판)	6-1판 개정(안)	개정사유																																								
30	<p>6 처방·공급 기관</p> <table border="1"> <thead> <tr> <th>확진자 분류</th> <th>처방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재택치료</td> <td>(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td> </tr> <tr> <td>생활치료센터</td> <td>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td> </tr> <tr> <td>재활의료기관</td> <td>재활의료기관(원외처방)</td> </tr> <tr> <td>노인요양시설</td> <td>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원외처방)</td> </tr> <tr> <td>요양병원</td> <td>요양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td> </tr> <tr> <td>감염병전담요양병원</td> <td>감염병전담요양병원(원내처방)</td> </tr> <tr> <td>감염병(거점)전담병원</td> <td>감염병(거점)전담병원(원내처방)</td> </tr> <tr> <td>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td> <td>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종합병원, 정신병원(원외처방)</td> </tr> <tr> <td>60세 이상 전문가용 RAT 양성 처방</td> <td>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 전문가용 RAT 양성시 처방 가능</td> </tr> </tbody> </table> <p>*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에서 조제 전달 * 요양병원·시설에서 대규모 처방대상자 발생으로 시군구 담당약국에서 공급이 어려운 경우 시·도 주관으로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소재 담당약국에 공급 ※ 라게브리오 처방-공급 기관과 동일</p>	확진자 분류	처방기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원외처방)	노인요양시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원외처방)	요양병원	요양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원내처방)	감염병(거점)전담병원	감염병(거점)전담병원(원내처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종합병원, 정신병원(원외처방)	60세 이상 전문가용 RAT 양성 처방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 전문가용 RAT 양성시 처방 가능	<p>6 처방·공급 기관</p> <table border="1"> <thead> <tr> <th>확진자 분류</th> <th>처방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재택치료</td> <td>(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td> </tr> <tr> <td>생활치료센터</td> <td>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td> </tr> <tr> <td>재활의료기관</td> <td>재활의료기관(원외처방)</td> </tr> <tr> <td>노인요양시설</td> <td>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원외처방)</td> </tr> <tr> <td>요양병원</td> <td>요양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td> </tr> <tr> <td>감염병전담요양병원</td> <td>감염병전담요양병원(원내처방)</td> </tr> <tr> <td>감염병(거점)전담병원</td> <td>감염병(거점)전담병원(원내처방)</td> </tr> <tr> <td>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td> <td>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종합병원, 정신병원(원외처방)</td> </tr> <tr> <td>60세 이상 전문가용 RAT 양성 처방</td> <td>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 전문가용 RAT 양성시 처방</td> </tr> </tbody> </table> <p>*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에서 조제 전달 * 요양병원·시설에서 대규모 처방대상자 발생으로 시군구 담당약국에서 공급이 어려운 경우 치료제공급 거점병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 물량을 활용하여 원내(요양·정신병원), 원외(물량 담당약국으로 운송 후 조제·전달, 요양시설) 처방(4.6) ※ 팍소로비드 처방-공급 기관과 동일</p>	확진자 분류	처방기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원외처방)	노인요양시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원외처방)	요양병원	요양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원내처방)	감염병(거점)전담병원	감염병(거점)전담병원(원내처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종합병원, 정신병원(원외처방)	60세 이상 전문가용 RAT 양성 처방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 전문가용 RAT 양성시 처방	<p>- 처방 기관 추가에 따른 개정</p>
확진자 분류	처방기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원외처방)																																										
노인요양시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원외처방)																																										
요양병원	요양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원내처방)																																										
감염병(거점)전담병원	감염병(거점)전담병원(원내처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종합병원, 정신병원(원외처방)																																										
60세 이상 전문가용 RAT 양성 처방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 전문가용 RAT 양성시 처방 가능																																										
확진자 분류	처방기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원외처방)																																										
노인요양시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원외처방)																																										
요양병원	요양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원내처방)																																										
감염병(거점)전담병원	감염병(거점)전담병원(원내처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종합병원, 정신병원(원외처방)																																										
60세 이상 전문가용 RAT 양성 처방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 전문가용 RAT 양성시 처방																																										

[Part 2.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한 투약보고 및 재고관리] 1. 치료제 투약 보고

쪽	I 치료제 투약이력 등록	I 치료제 투약이력 등록	- 치료제 제공기관 유형 선택 시 유의사항 추가
37	<p>① 투약치료제 선택 ② 증상발생일 및 모든 항목 입력 (비고 제외) ※ 치료제 종류에 따라 항목이 상이하므로 입력에 유의 ③ [최종제출] 클릭</p> <p>※ 위 정보는 원활한 실명을 위해 임의로 입력 되었습니다.</p>	<p>① 투약치료제 선택 ② 증상발생일 및 모든 항목 입력 (비고 제외) ※ 치료제 종류에 따라 항목이 상이하므로 입력에 유의 ③ [최종제출] 클릭</p> <p>※ 위 정보는 원활한 실명을 위해 임의로 입력 되었습니다.</p>	<p>- 치료제 제공기관 유형 선택 시 유의사항 추가</p>

(신설)

「치료제 제공기관 유형」 선택 시 유의사항

쪽	현행(6판)	6-1판 개정(안)	개정사유
		① 재택치료(외래) : 재택치료 환자 처방 시 ② 입원(의료기관) : 입원 환자 처방 및 투여 시 ③ 생활치료센터(외래)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외래진료센터 등을 통해 처방 및 투여 시 ④ 생활치료센터(입소)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센터 내 처방 및 투여 시 ⑤ 요양병원 : 요양병원 내 환자(입소자·종사자) 처방 및 투여 시 ⑥ 요양원(외래) : 요양원 내 환자(입소자·종사자) 처방 및 투여 시 ⑦ 응급 : 응급실 내 환자 처방 및 투여 시	

(삭제) [Part 3. 서식 및 참고자료] II. 먹는치료제 팩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 및 리토나비르), 2-3 시도 물량 조정신청서(시도→방대본)

쪽	현행(6판)	6-1판 개정(안)	개정사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2-3 시도 물량 조정신청서(시도 → 방대본)</p> <p><input type="checkbox"/> 신청 기관: 서울 <input type="checkbox"/> 신청 일자: '22. 1. 9 (1) <input type="checkbox"/> 조정 적용일자 : '22. 1. 14 <input type="checkbox"/> 작성자 : 김철수, 전화번호 사무실/ 핸드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시도</th> <th>시군구 (약국인 경우만 작성)</th> <th>대상 기관</th> <th>현 재고량 (1.9. A)</th> <th>조정 요구량 (B)</th> <th>추가 요구량 (C)</th> <th>소계 (D=A+ B+C)</th> <th>조정사유</th> <th>조정후 공급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서울</td> <td>관악구</td> <td>A 약국</td> <td>200</td> <td>-10</td> <td>-</td> <td>190</td> <td>○</td> <td>B양류 +10</td> </tr> <tr> <td>서울</td> <td>성동구</td> <td>B 약국</td> <td>150</td> <td>+10</td> <td>-</td> <td>160</td> <td>○</td> <td>-</td> </tr> <tr> <td>서울</td> <td>-</td> <td>C 생활 치료 센터</td> <td>100</td> <td>-30</td> <td>-</td> <td>70</td> <td>○</td> <td>D생활치료 센터 +30</td> </tr> <tr> <td>서울</td> <td>-</td> <td>D 생활 치료 센터</td> <td>70</td> <td>+30</td> <td>+10</td> <td>140</td> <td>○</td> <td>-</td> </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p>1) 시군구 대량 환자 발생 긴급상황 등으로 시군구 물량 조정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방대본에 물량 조정을 사전신청하여 조정 가능 2) 환자적용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방대본(자원지원팀)우선으로 협의하고 사후 신청 가능함 3)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으로 공문으로 제출 및 문의(자원지원팀 043-719-9152, 9158)</p> </div>	시도	시군구 (약국인 경우만 작성)	대상 기관	현 재고량 (1.9. A)	조정 요구량 (B)	추가 요구량 (C)	소계 (D=A+ B+C)	조정사유	조정후 공급기관	서울	관악구	A 약국	200	-10	-	190	○	B양류 +10	서울	성동구	B 약국	150	+10	-	160	○	-	서울	-	C 생활 치료 센터	100	-30	-	70	○	D생활치료 센터 +30	서울	-	D 생활 치료 센터	70	+30	+10	140	○	-																												(삭제)	- 시도 물량 조정신청서 삭제
시도	시군구 (약국인 경우만 작성)	대상 기관	현 재고량 (1.9. A)	조정 요구량 (B)	추가 요구량 (C)	소계 (D=A+ B+C)	조정사유	조정후 공급기관																																																																			
서울	관악구	A 약국	200	-10	-	190	○	B양류 +10																																																																			
서울	성동구	B 약국	150	+10	-	160	○	-																																																																			
서울	-	C 생활 치료 센터	100	-30	-	70	○	D생활치료 센터 +30																																																																			
서울	-	D 생활 치료 센터	70	+30	+10	140	○	-																																																																			

[Part 3. 서식 및 참고자료] II. 먹는치료제 팩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 및 리토나비르), 2-4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내용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니르마트렐비르 1정(772.5mg) 중 니르마트렐비르 150mg 리토나비르 1정(787.4mg) 중 리토나비르 100m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니르마트렐비르 1정(772.5mg) 중 니르마트렐비르 150mg 리토나비르 1정(787.4mg) 중 리토나비르 100mg 	- 팩스로비드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변경 내용 반영: 리토나비르 제조원 추가
102	4) 중증 코로나19 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4) 중증 코로나19 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 팩스로비드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변경 내

쪽	현행(6판)	6-1판 개정(안)	개정사유									
	<p>대상자에서의 유효성</p> <p>이 약의 자료는 SARS-CoV-2 감염이 확진된 입원하지 않은 유증상 성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제2/3상,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시험인 EPIC-HR(NCT04960202)의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임상시험 대상자는 당뇨병, 과체중(BMI ≥25), 만성 폐질환(천식 포함), 만성 신장질환, 현재 흡연자, 면역억제성 질환 또는 면역억제 치료,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겸상적혈구 질환, 신경발달 장애, 활동성 암, 의학관련 기술의존성 상태 등의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 가능성 위험인자를 한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거나, 이런 동반 질환에 관계없는 60세이상의 고령 환자였다.</p>	<p>대상자에서의 유효성</p> <p>이 약의 자료는 SARS-CoV-2 감염이 확진된 입원하지 않은 유증상 성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제2/3상,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시험인 EPIC-HR(NCT04960202)의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임상시험 대상자는 당뇨병, 과체중(BMI >25), 만성 폐질환(천식 포함), 만성 신장질환, 현재 흡연자, 면역억제성 질환 또는 면역억제 치료,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겸상적혈구 질환, 신경발달 장애, 활동성 암, 의학관련 기술의존성 상태 등의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 가능성 위험인자를 한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거나, 이런 동반 질환에 관계없는 60세이상의 고령 환자였다.</p>	<p>용 반영: 과체중(BMI ≥25 → BMI >25)</p>									
106	(신설)	<table border="1" data-bbox="974 976 1657 1417"> <thead> <tr> <th data-bbox="974 976 1079 1018">구분</th> <th data-bbox="1079 976 1657 1018">제조원 정보</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974 1018 1079 1273" rowspan="2">니르마 트렐비르</td> <td data-bbox="1079 1018 1657 1161"> <원료> ① Pfizer Ireland Pharmaceuticals (아일랜드, Ringaskiddy) ② Changzhou SynTheAll Pharmaceutical Co. Ltd (중국) ③ Jilin Asymchem Laboratories Co. Ltd (중국) </td> </tr> <tr> <td data-bbox="1079 1161 1657 1273"> <정제제조> ① Pfizer Manufacturing Deutschland GmbH (독일) ② Pfizer Ireland Pharmaceuticals (아일랜드, Little Connell) </td> </tr> <tr> <td data-bbox="974 1273 1079 1417">리토나비르</td> <td data-bbox="1079 1273 1657 1417"> <원료> ① AbbVie S.r.l. (이탈리아) ② Hetero Drugs Limited (인도) </td> </tr> <tr> <td colspan="2" data-bbox="974 1417 1657 1436"><정제제조></td> </tr> </tbody> </table>	구분	제조원 정보	니르마 트렐비르	<원료> ① Pfizer Ireland Pharmaceuticals (아일랜드, Ringaskiddy) ② Changzhou SynTheAll Pharmaceutical Co. Ltd (중국) ③ Jilin Asymchem Laboratories Co. Ltd (중국)	<정제제조> ① Pfizer Manufacturing Deutschland GmbH (독일) ② Pfizer Ireland Pharmaceuticals (아일랜드, Little Connell)	리토나비르	<원료> ① AbbVie S.r.l. (이탈리아) ② Hetero Drugs Limited (인도)	<정제제조>		<p>- 팩스로비드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변경 내용 반영: 제조원 정보 기재</p>
구분	제조원 정보											
니르마 트렐비르	<원료> ① Pfizer Ireland Pharmaceuticals (아일랜드, Ringaskiddy) ② Changzhou SynTheAll Pharmaceutical Co. Ltd (중국) ③ Jilin Asymchem Laboratories Co. Ltd (중국)											
	<정제제조> ① Pfizer Manufacturing Deutschland GmbH (독일) ② Pfizer Ireland Pharmaceuticals (아일랜드, Little Connell)											
리토나비르	<원료> ① AbbVie S.r.l. (이탈리아) ② Hetero Drugs Limited (인도)											
<정제제조>												

쪽	현행(6판)	6-1판 개정(안)	개정사유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974 236 1079 276">구분</th> <th data-bbox="1079 236 1657 276">제조사 정보</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974 276 1079 347"></td> <td data-bbox="1079 276 1657 347"> ① AbbVie Deutschland GmbH & Co KG (독일) ② Hetero Labs Limited (인도) </td> </tr> <tr> <td data-bbox="974 347 1079 528"> 팩스로비드 (니르마트렐 비르 + 리토나비르) </td> <td data-bbox="1079 347 1657 528"> <포장> ① Pfizer Manufacturing Deutschland GmbH (독일) ② Pfizer Italia S.r.L (이탈리아) ③ Anderson Brecon Inc. (미국) ④ Pfizer Ireland Pharmaceuticals (아일랜드, Little Connell) </td> </tr> </tbody> </table>	구분	제조사 정보		① AbbVie Deutschland GmbH & Co KG (독일) ② Hetero Labs Limited (인도)	팩스로비드 (니르마트렐 비르 + 리토나비르)	<포장> ① Pfizer Manufacturing Deutschland GmbH (독일) ② Pfizer Italia S.r.L (이탈리아) ③ Anderson Brecon Inc. (미국) ④ Pfizer Ireland Pharmaceuticals (아일랜드, Little Connell)	
구분	제조사 정보								
	① AbbVie Deutschland GmbH & Co KG (독일) ② Hetero Labs Limited (인도)								
팩스로비드 (니르마트렐 비르 + 리토나비르)	<포장> ① Pfizer Manufacturing Deutschland GmbH (독일) ② Pfizer Italia S.r.L (이탈리아) ③ Anderson Brecon Inc. (미국) ④ Pfizer Ireland Pharmaceuticals (아일랜드, Little Connell)								
109	<p>9. 한국화이자제약(주)는 EPIC-HR 임상시험에 등록된 모든 시험대상자의 데이터가 포함된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2022년 2월 2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함</p> <p>*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조율하여야 함</p>	(삭제)	- 팩스로비드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변경 내용 반영: 조건이행						
(삭제) [Part 3. 서식 및 참고자료] III. 먹는치료제 라게브리오(물누피라비르), 3-3 시도 물량 조정신청서(시도→방대본)									

쪽	현행(6판)	6-1판 개정(안)	개정사유																																																																								
	<p>3-3 시도 물량 조정신청서(시도 - 방대본)</p> <p><input type="checkbox"/> 신청 기관: 서울 <input type="checkbox"/> 신청 일자: '22.1.9 <input type="checkbox"/> 조정 적용일자: '22.1.14 <input type="checkbox"/> 작성자: 김철수, 전화번호 사무실/ 핸드폰</p> <table border="1" data-bbox="293 359 860 638"> <thead> <tr> <th>시도</th> <th>시군구 (약국인 경우만 작성)</th> <th>대상 기관</th> <th>합 계교량 (19), (A)</th> <th>조정 요구량 (B)</th> <th>추가 요구량 (C)</th> <th>소계 (D=A+B+C)</th> <th>조정사유</th> <th>조정후 공급가능</th> </tr> </thead> <tbody> <tr> <td>서울</td> <td>관악구</td> <td>A 약국</td> <td>200</td> <td>-10</td> <td>-</td> <td>190</td> <td>○</td> <td>공약용 +10</td> </tr> <tr> <td>서울</td> <td>성동구</td> <td>B 약국</td> <td>150</td> <td>+10</td> <td>-</td> <td>160</td> <td>○</td> <td>-</td> </tr> <tr> <td>서울</td> <td>-</td> <td>C 성동 지류 변터</td> <td>100</td> <td>-30</td> <td>-</td> <td>70</td> <td>○</td> <td>D성동지류 변터 +30</td> </tr> <tr> <td>서울</td> <td>-</td> <td>D 성동 지류 변터</td> <td>70</td> <td>+30</td> <td>+10</td> <td>140</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1) 시군구 대량 환자 발생, 긴급상황 등으로 시군구간 물량 조정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방대본에 물량 조정을 사전신청하여 조정 가능 2) 환자처방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방대본(자원지원팀)유선으로 협의하고 사후 신청 가능함 3)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으로 공문으로 제출 및 협의(자원지원팀 048-719-9462, 9158, 9166)</p>	시도	시군구 (약국인 경우만 작성)	대상 기관	합 계교량 (19), (A)	조정 요구량 (B)	추가 요구량 (C)	소계 (D=A+B+C)	조정사유	조정후 공급가능	서울	관악구	A 약국	200	-10	-	190	○	공약용 +10	서울	성동구	B 약국	150	+10	-	160	○	-	서울	-	C 성동 지류 변터	100	-30	-	70	○	D성동지류 변터 +30	서울	-	D 성동 지류 변터	70	+30	+10	140	○	-																												(삭제)	- 시도 물량 조정신청서 삭제
시도	시군구 (약국인 경우만 작성)	대상 기관	합 계교량 (19), (A)	조정 요구량 (B)	추가 요구량 (C)	소계 (D=A+B+C)	조정사유	조정후 공급가능																																																																			
서울	관악구	A 약국	200	-10	-	190	○	공약용 +10																																																																			
서울	성동구	B 약국	150	+10	-	160	○	-																																																																			
서울	-	C 성동 지류 변터	100	-30	-	70	○	D성동지류 변터 +30																																																																			
서울	-	D 성동 지류 변터	70	+30	+10	140	○	-																																																																			